[양식 제7호]

친양자파양신고서

※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, 선택항· ★ 해당번호에 "○"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00년 1) 대한법률구조공단

Ť	구 분		양 부								양 모							
① 양		한글	(정)	/ (E		۱	콘(한자	·)		한글	(성) /	(명)	į	본(한지	(})			
	성명	한자	(성)	/ (명		Ž	-생연월	일		한자	(성) /	(명)	출	생연월]일			
		주민]등록	·번호		·	_			주민]등록번:	호			_			
친	등 록 기준지																	
	주소																	
② 친 양 자	성명 -	한딑	글 (성)	/ (명)				본(현	·				2	주민등	등록번.	호		
		한기	(상)	/ (명)				출생인	년월일						_			
	등록기	지																
	주 소																	
	종전의	비성	(姓)	한글			한자		종전	의 .	본(本)	한글			한자			
	부활된	된 성	(姓)	한글			한자		부활	된 .	본(本)	한글			한자			
		(0)	})부	성명			_	등록기										
3)5	쿠활되는 냥)부모	- ` `		0 0				주민등										
()	がアエ	(%	})모	성명				등 록 7 주민등		+								
④기타사항																		
⑤ 재판확정일자						년	5	실	일	1	법원명							
⑥신고인			성	명				<u></u>	또는 서	명 =	주민등록	투번호			_			
			자	격	11소	제기	기자	2 소 의	비상대	방	3기타	(자격	:)	
			주	소														
			전	화						-	이메일							
⑦제출인			성	명						3	주민등록	번호			_			

작성 방법

- ※ 이 신고서는 「민법」제908조의5에 따른 친양자 파양의 재판 또는 「입양특례법」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※ 등록기준지: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①란 및 ②란: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 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③란: 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파양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.
- ④란: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⑥란: 천양자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"○"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(또는 서명)합니다.
- ⑦란: 제출자(신고인 여부 불문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 부 서 류

- ※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1.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.
- 2.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.
- 3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: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
- 4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**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